

의안번호	2201411
의 퇴 인	박성민의원
회 답 일	2024. 8. 12.
추계번호	24C189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제3항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 서는 아니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제3항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확대(안 제11조제3항)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실시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 지원 횟수, 지원 금액 등을 고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난임 부부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 폐지되었고, 체외수정 지원 횟수도 총 20회로 확대되었음

[표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현황(2024년)

구분	내용
소득기준	2024년 1월부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지원횟수	체외수정: 총 20회 지원 (신선배아 9회 + 동결배아 7회 + 추가지원 4회) 인공수정: 총 5회 지원
지원금액	신선배아: 44세 이하 - 최대 110만원, 45세 이상 -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44세 이하 - 최대 50만원, 45세 이상 -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44세 이하 - 최대 30만원, 45세 이상 - 최대 2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대하여 연령·소득의 차등이나 지원 횟수의 제한이 없어지는 경우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어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향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추가로 요청할 난임부부의 규모·연령 및 추가지원 횟수 등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